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리규정

202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제정일 : 2019. 03. 26.
1차 개정일 : 2019. 10. 29.
2차 개정일 : 2020. 03. 25.
3차 개정일 : 2021. 01. 13.
4차 개정일 : 2021. 04.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이하 「데이터바우처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바우처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의를 통하여 추천된 전문 분야별 공공기관이나 협회·단체로서, 데이터바우처사업의 수요 발굴과 성과 확산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데이터 공급기업」(이하 “공급기업”이라 한다)이란 데이터바우처사업에 참여하는 데이터 판매기업과 데이터 가공기업으로서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 「데이터 판매기업」(이하 “판매기업”이라 한다)이란 판매가 가능한 데이터를 자체 보유하거나 판매뿐 아니라 처분이 가능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기업을 말한다.
5. 「데이터 가공기업」(이하 “가공기업”이라 한다)이란 데이터 가공서비스 수행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6. 「데이터 수요기업」(이하 “수요기업”이라 한다)이란 데이터바우처사업 공모를 통해 데이터 바우처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7. 「구매바우처」란 데이터바우처사업에서 수요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데이터 상품 등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 「가공바우처」란 데이터바우처사업에서 수요기업이 가공기업으로부터 데이터 가공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9. 「운영조정위원회」란 사업의 정책적 방향 제시와 운영상 주요사안의 결정을 위해 데이터 산업 분야의 기술, 산업, 정책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0. 「평가위원회」란 각종 지정, 선정, 결과 등 각종 평가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1. 「심의위원회」란 선정평가 후 부문별 지원금 조정 심의, 사업관련 이의신청 검토 협약내용 변경, 제재 수준 의결 등의 사업추진 과정의 조정·의사결정 사항 의결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2. 「규정위원회」란 사업관련 법률자문 및 규정 등의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3. 「부정심의위원회」란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부정행위 등 보조금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위반사안의 조사 및 처리에 대한 의결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3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본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총괄 관리
2. 지원분야 및 규모의 조정
3. 시행·운영계획 수립
4. 부처협력을 통한 분야별 전문기관 추천

제4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지원
2. 사업 관리 규정의 제·개정
3. 사업비의 총괄관리 및 예산집행 점검
4. 사업 통합 설명회 및 모집 홍보 운영
5. 공급기업 평가 및 지정, 풀 구성
6. 공급기업 교육 및 의무이행 점검
7. 수요기업의 신청접수, 평가, 선정, 관리 및 이행점검
8. 수요기업의 교육 및 컨설팅 수행
9. 운영조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 우수성과사례 발굴 및 확산
11. 데이터바우처사업 성과분석
12.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전문기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분야의 사업 수요 발굴
2. 수요기업 선정 지원
3. 사업성과 확산 지원
4. 기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6조(공급기업) 공급기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약과 관련 규정의 숙지와 준수
2. 수요기업과의 사전협의를 통한 계획 및 예산 수립
3. 수요기업과 협의된 방법으로 데이터 및 가공 상품 제공
4. 기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요기업) 수요기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약과 관련 규정의 숙지와 준수
2. 지정된 공급기업과의 사전협의를 통한 계획 및 예산 수립
3. 협약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수행
4. 협약상의 민간부담금 및 데이터 활용 결과보고의 성실한 이행
5. 기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운영조정위원회 등) ① 운영조정위원회는 데이터산업 분야의 기술, 산업, 정책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한다.
- ② 운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전담기관장의 위촉으로 최소 4인 이상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 ③ 운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검토 및 사업 운영상 주요사안의 결정
 2.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정, 선정, 결과 등 평가 및 심사에 관한 업무 일체
 3. 최종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정된 과제의 성실성 여부 검증
 4. 각종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의 업무
 5. 관련 규정의 개정 및 법적 문제 검토
 6. 기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운영조정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운영하되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규정위원회, 부정심의위원회 등의 실무위원회를 두고 필요시 운영할 수 있다.
- ⑤ 평가위원회는 공급기업의 지정을 위한 심사평가, 수요기업의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최종 결과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⑥ 심의위원회는 사업관련 이의신청의 심의 및 협약의 해지, 정부지원금의 환수, 배상, 참여제한, 부정당사업자 등록, 형사고발 등 제재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⑦ 규정위원회는 데이터바우처사업 관련 법률 자문, 규정의 제개정 및 규정의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 ⑧ 부정심의위원회는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보조금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위반사안의 조사 및 처리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 ⑨ 각 위원에게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2시간 기준 1회당 20만 원으로 하되 하루 최대 6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제3장 사업 준비 및 공고

- 제9조(사업수요조사 등) ① 전담기관은 데이터바우처사업이 산업환경과 기술변화에 부응하는 산업분야의 다양한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데이터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예측조사
 2. 데이터산업 분야별 기술 수준 및 기술혁신역량조사
 3. 데이터바우처 과제 발굴을 위한 데이터사업 수요조사
 4.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 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요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제안하는 데이터 사업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데이터 사업의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데이터 사업의 개발 기간, 정부 지원 규모 및 형태
 4. 제안하는 데이터 사업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5. 제안하는 데이터 사업에 대한 평가 주안점

-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공고) ① 전담기관은 매년 제3조에 따라 해당하는 각 사업별로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절차, 평가기준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일정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바우처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데이터바우처사업 과제의 신청자격
3. 데이터바우처사업 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
4. 데이터바우처사업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절차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담기관은 데이터 사업 수요조사 결과 등을 시행계획의 수립·공고 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특별 지원 시행) ① 전담기관은 사회현안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특별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공고문에 따른다.

제4장 사업 추진 절차 및 내용

제1절 공급기업의 신청·지정·관리

제12조(신청자격 및 제한) ① 공급기업은 데이터 판매 또는 가공이 가능한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참여 자격 요건은 공고문에 따른다.

② 공급기업 중 판매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판매가 가능한 데이터를 자체 보유하거나 판매뿐 아니라 처분이 가능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기업에 한한다.

③ 부정당업자 등록 등 정부 또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서 제재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은 공급기업이 될 수 없으며, 공급기업으로 지정 후에도 상기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재 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데이터바우처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모집 방법) ① 공급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업무의 유형에 따라 판매 또는 가공을 구분하여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신청된 서류를 심사하여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을 지정한다.

제14조(제출 서류) ① 공급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업정보,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 가격 체계, 데이터 상품 법률 검토 확인서 등의 기초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1항의 기초 서류 이외에 추가되는 서류를 공고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 지정 및 공고) ① 전담기관은 공급기업 신청서의 기재사항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운영 지침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지정한다.

② 전담기관은 지정된 공급기업에게 일정 기간 후에 결과를 통보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공급기업의 자격은 지정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협약을 체결한 공급기업의 경우 본문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협약의 종료일까지 공급기업의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지정 탈락한 기업은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공급기업 관리) ① 전담기관은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사업운영규정 및 운영방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급기업은 전담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② 공급기업은 해당 데이터 또는 가공 서비스 상품의 등록 및 추가, 수요기업과 협의, 수요기업 교육 지원, 사업추진 현황 보고 및 감리 및 수요기업의 현장 이행점검 및 결과평가에 협조한다.

제17조(상품의 등록과 추가) ① 공급기업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해당 데이터 또는 가공 상품을 등록하고 추가할 수 있다.

② 공급기업의 요청이 있거나, 등록된 상품에 저작권 등 법적 분쟁 발생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담기관은 즉시 상품 게시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제2절 수요기업의 신청·선정·관리

제18조(신청자격 및 제한) ① 데이터 활용 수요를 가진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참여 자격 요건은 공고문에 따른다.

② 대기업·조달청 기준 부정당업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휴업, 세금 체납기업은 수요기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세부 신청자격은 공고문에 따른다.

③ 데이터바우처에 참여하는 수요기업은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양한 혁신 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신청 목적상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현안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특별 지원을 위해 신청자격을 달리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공고문에 따른다.

제19조(모집 방법) ① 수요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고문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지정된 전문기관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② 수요기업은 사전에 공급기업과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제안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수요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전담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민간부담금 및 사업비 산정) ① 수요기업은 정부의 데이터바우처 지원금 이외에 기업의 민간부담금을 매칭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② 민간부담금의 세부 매칭 기준 및 사업비 산정 방법은 공고문에 따른다.

제21조(제출 서류) ① 수요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계획을 기술하여 제출한다.

② 본 사업의 수요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1항의 서류 이외에 추가되는 서류를 공고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심사, 선정 및 통보) ① 전담기관은 제출 서류의 누락 여부 및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운영 지침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선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해당 분야의 수요를 사전검토하고 전담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평가방법은 서면 또는 발표 평가로 진행하고 세부사항은 공고문에 따른다.

④ 전담기관은 선정된 수요기업에게 일정 기간 후에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⑤ 수요기업은 선정된 후 협약을 위한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협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⑥ 선정 탈락한 기업은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절 협약 및 사업 관리

제23조(협약의 체결) ① 전담기관은 수요기업 및 사전협의를 제출한 공급기업과 다자 협약을 체결하며, 동일기업은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② 전담기관은 협약체결을 위해 공급기업에게 이행보증보험 등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약 당사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특정 공급기업에 편중되어 협약이 체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공고문에 따른다.

제24조(수요기업 관리) ①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수행을 위해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사업기간 내 수요기업의 민간부담금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현황 점검을 위해 현장 이행점검, 결과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수요기업은 결과평가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수요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25조(공급기업 관리) ① 전담기관은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수행을 위해 의무 이행 점검, 감리 및 데이터 품질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사이에 협약된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사업기간 내 공급기업의 사업추진 현황 점검을 위해 감리, 결과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공급기업은 결과평가에 대한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공급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26조(데이터의 제공) ①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에게 협약 시 제출한 수행계획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게 협약된 데이터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외부 감리법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비용 지급) ① 전담기관은 협약체결 이후 사업운영 지침상 규정된 요건을 점검한 후 공급기업에게 선금을 지급하며, 공급기업에 대한 전담기관이 지정한 외부 감리법인의 확인, 수요기업에 대한 최종 사업 결과평가 후 잔금을 지급한다. 단, 수요기업 및/또는 공급기업에 대하여 제31조에 따른 제재조치가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한 잔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세부 지급 일정은 사업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28조(점검 및 평가) ①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은 전담기관이 시행하는 민간부담금 이행 확인 요청, 현장 이행점검, 시정조치, 감리 등 각종 자료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최종 사업평가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공급기업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감리법인의 점검을 완료한 후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사업 관리를 위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의 사업추진을 독려해야 하며 추진실적이 부진한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협약 변경) 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양자 간 합의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의결을 통해 승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보 변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수요기업은 다자 협약에 참여한 공급기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30조(협약 해지) ① 전담기관은 협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부도, 도산, 상호분쟁, 불완전한 사전협약, 의무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사업기간 중에도 부적격 기업의 선정 사실을 확인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공문에 의한 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정부지원금의 집행 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은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적발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정부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제재 조치) ① 전담기관은 민간부담금 불이행, 결과보고서 미제출, 전담기관의 요청 불응 및 기타 규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별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공급기업 또는 수요기업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정부지원금의 환수, 배상, 참여제한, 부정당사업자 등록 및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이때, 정해진 기한 내 환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채권추심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재조치에 대한 상세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은 별도의 사업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32조(결과평가) ① 수요기업은 민간부담금 이행 증빙, 사업결과보고서 등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최종 사업결과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업에 대한 결과평가는 사업운영 지침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③ 평가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 으로 나누며, “미흡” 은 “성실 수행” 과 “불성실 수행” 으로 나눈다.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요기업은 전담기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장 기타사항

제33조(비밀유지 의무) 본 사업에 참여한 모든 기관 및 기업은 데이터바우처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타 기관 및 기업의 사업모델, 비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성과분석용 자료 제공 의무) 본 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35조(정보제공동의) ① 전담기관은 심사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에게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6조(관계법령 및 규정 준수 등) ①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관은 사업을 수행·관리함에 있어 정보통신방송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방송통신발전기금법, 당해연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당해연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해당 기금운용·관리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본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전담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37조(해석) ① 협약 당사자는 상호 간에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유권해석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본 규정을 성실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제38조(관할) 협약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부 칙 <2019. 0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지방법) 이 규정은 관리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부 칙 <2019.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지방법) 이 규정은 관리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부 칙 <2020.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지방법) 이 규정은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부 칙 <2021. 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지방법) 이 규정은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3조(공급기업 지정) 제15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지정된 공급기업은 2021년도 8월 31일까지 공급기업의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의 공급기업이 2021년에 제23조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협약의 종료일까지 공급기업의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지방법) 이 규정은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별표] 제재기준

공통사항

- 신청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 및 중간·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조작한 경우
- 협약기간 내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을 위반하였거나 민.형사상 소추된 경우
- 본 사업과 관련한 내용으로 부당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본 사업에 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관련 규정, 사업운영 지침, 기타 가이드 미숙지 등으로 사업수행에 혼선을 초래한 경우
-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전담기관의 이행점검 또는 시정조치 등에 불응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등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참여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 고의로 사업을 지연한 경우
- 본 사업의 결과물을 사업목적 외로 공개 및 사용한 경우
- 외부 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 정부지원금의 일부 환급 등 부정수급 조장 행위에 가담한 경우
- 기타 상기 항목에 해당하지 않지만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수요기업

- 협약 시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민간부담금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데이터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결과평가에서 “미흡”으로 분류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점검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급기업

- 구매데이터의 제공 및 데이터 가공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